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

2018.01.02. 제정

제1조 (목적)

본 기준 및 절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법 제4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한국채권투자자문(이하 “회사”라 한다.)이 투자자와 투자 자문계약 또는 투자 일임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를 차별하여 수수료 부과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 자문계약 또는 투자 일임계약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등(이하 “관련 법규”라고 한다)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 및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자문”이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2. “투자일임”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아 투자별로 구분하여 금융상품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기본수수료”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후 투자자문계약 자산 또는 투자일임계약자산에 투자자와 사전에 약정된 수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서 운용성과와는 관련 없는 일종의 관리수수료를 말한다.
4. “성과수수료”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종료일에 계약자산을 평가하여 계약체결 시점에 투자자와 사전에 약정된 성과수수료 부과기준을 충족한 경우 부과되는 수수료를 말한다.
5. “기준지표 등”이라 함은 성과수수료를 수령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목표수익률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지표 또는 회사와 투자자간 합의에 의하여 정한 기준수익률을 말한다.

제4조 (수수료의 부과기준)

1. 회사는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수수료는 운용자산의 특성,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 투자자의 투자 규모 등을 고려

하여 합리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3. 고객에게 부과하는 자문, 일임수수료는 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상품별 수수료율을 회사에서 정책적으로 책정하되, 계약자산 규모, 요구되는 서비스 수준, 인정 가능한 특별한 사정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구분	수수료율	산정방법	수취시기
기본수수료	상품별 책정	계약금액(평가금액) × 기본수수료율	매 3,6,9,12월말 발생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달 27일 이내(후취)
성과수수료	상품별 책정	계약금액 × (위탁자산 수익률 - 기준수익률) × 성과수수료율	계약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후취)

제5조 (수수료 체계)

투자자는 회사와 투자자문 계약 또는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수수료 지급 방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회사의 수수료 정책을 기본으로 투자자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1) 기본수수료만 지급
- 2)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를 지급

제6조 (성과수수료의 수령 기준)

회사는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1. 투자자가 전문투자자인 경우
2.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1) 성과수수료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준지표 등에 연동하여 산정될 것
 - 2) 운용성과가 기준지표 등의 성과보다 낮은 경우에는 성과수수료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적은 운용보수를 받게 되는 보수체계를 갖출 것
 - 3) 운용성과가 기준지표 등의 성과를 초과하더라도 그 운용성과가 부(負)의 수익률을 나타내거나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성과수수료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 4) 그 밖에 성과수수료의 산정방식,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제7조 (증액 및 감액, 중도해지 등)

1.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증액금액에 계약 잔여일수를 계산하여 수수료를 부과한다.
2. 계약기간 중 증액 및 감액이 가능하며, 증액시점의 계약자산은 현금으로 한다.
3.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이 계약만료일 이전에 해지되는 경우에는 계약 금액 또는 순자산총액에 운용 경과일수를 계산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며 계약해지 일

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기본수수료의 환급 및 해지수수료의 납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4. 계약의 중도해지 시 해당계약과 관련한 대가를 미리 지급받은 때에는 미경과 운용일수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투자자에게 반환한다.
5.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감액금액에 운용 경과일수를 계산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며, 수수료를 미리 지급받은 때에는 감액금액에 계약 잔여일수를 계산하여 수수료를 반환한다.

제8조 (수수료의 부과절차)

1. 수수료 수준은 계약의 특성, 규모,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개별 계약 기준으로 경영진이 결정한다.
2. 투자 일임수수료 및 투자 자문수수료의 경우 관련 법규에서 달리 정하는 사항이 없는 한 투자자와 합의하여 체결하는 투자일임계약서 및 투자자문계약서에 수수료 계산방법, 수수료 계산기간 및 수수료 지급시기 등을 상세히 기술한다.
3. 회사는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수수료를 추가로 받지 아니한다.

제9조 (설명의무)

회사는 법 제47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53조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제10조 (수수료의 고지)

회사는 법 제 9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100조에 따라 일반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투자 일임보고서에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시 및 통보)

회사는 법 제 58조 1항에 따라 이 기준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fiam.co.kr>)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법 제 58조 3항에 의거 이 기준을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투자 광고)

회사의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의거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기준의 제정 및 개정)

이 기준은 이사회의 결정으로 제정 및 개정한다.

부 칙 (제정 2018년 1월 2일)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8년 1월 2일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전에 결정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이 기준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본다.